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유수제어밸브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필요 등
기술기준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최고사용압력 규정(안 제3조의2)
- 나. 자동기동장치의 환경시험 도입(안 제5조의2)
- 다. 자동기동장치의 반복시험 도입(안 제5조의3)
- 라. 배수밸브의 크기 규정 (안 제7조제1항제10호)
- 마. 점착시험 도입 (안 제8조의2)
- 바. 반복시험 도입 (안 제8조의3)
- 사.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도입 (안 제8조의4)
- 아. 유수검지장치의 내압시험 강화 (안 제9조)
- 자. 유수신호의 지연시간 규정 (안 제10조)
- 차. 알람스위치 성능시험 강화 (안 제12조)
- 카. 시트누수시험 도입 (안 제12조의2)
- 타. 일제개방밸브의 내압시험 강화 (안 제15조)